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제350회 임시회
2016. 8. 30.(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1.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6년 8월 19일
- 회부일자 : 2016년 8월 22일

3. 제안이유

-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른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위·수탁 협약 종료(2016. 12. 31.)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 자연학습원 운영의 재협약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4. 주요내용

- 위탁대상 :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 위탁기간 : 3년('17.01.01.~'19.12.31.)
- 위 치 : 충청북도 소재
- 수탁기관 : 청소년단체·법인, 청소년관련학과 개설 대학 및 학교법인
 - ※ (현)수탁기관 : 학교법인 주성학원(대표 박재택, '14.01.01~'16.12.31)
- 위탁방법 : 공개모집 또는 현 수탁기관과 위탁 연장
 - ※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 제12조 :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위탁 주요사무

-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재산관리, 자연학습원 시설사용료 부과·징수
- 자연학습원의 공익적 기능에 부합하는 교육·훈련
- 기타 자연학습원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사무

4. 검토의견

○ 법적 근거 및 동의안의 내용

- 본 동의안은 「청소년 기본법」 제63조 및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1항·제2항에 따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내용으로,
- 자치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3항 및 동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의안의 법적 제출 절차 등은 적정함.
- 충청북도 자연학습원을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민간전문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위·수탁 목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종합의견

- 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민간위탁은 그 업무를 민간으로 하여금 대신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조직의 방대화를 억제하고, 위탁되는 사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이를 담당하도록 하여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하며,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과 아울러,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단순한 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민간위탁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수탁자 선정에 있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고 운영과정에 있어서도 수시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자료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재산현황

○ 토지 : 20필지 231,739㎡

○ 건물 : 6동 5,208.43㎡

(단위 : ㎡. '16.8월 현재)

연번	동별	층별	지 번	구 조	면 적	비 고
1	본관	지하2층	287-4	철근콘트리트구조	1,641.74	
		지하1층	“	“	733.07	
		지상1층	“	“	336.23	
		지상2층	“	“	875.51	
		지상3층	“	“	1,145.14	
2	화장실/샤워실	1층	287(잡)	“	45.00	
3	지도자숙소	1층	287(잡)	일반목구조/목조트 러스위칭글마감	48.00	
					72.00	
					80.00	
4	야외무대/창고	1층	231-1	일반철골구조	70.78	06.1.10신축
5	무대옆 화장실	1층	“	벽돌구조/철근콘크 리트평슬래브지붕	41.76	08.5.28신축
6	조류관람장		287-4	저적조/철파이프조	119.20	
합 계					5,208.43	

○ **주요시설 : 8종**

- ① 심신수련장(숙박동 뒤 9,917㎡, 10점)
- ② 야영장(하천변 1,637㎡) : 급수대 2개소
- ③ 잔디운동장(9,912㎡, 3면)
- ④ 암석원(본관동내 4종 38점)
- ⑤ 식물교재원(잔디운동장위 9,917㎡ 수목139종)
- ⑥ 태양열 집열판(집열판 52장, 잔디운동장 내) : 2004년 설치
- ⑦ 서바이벌게임장(식물교재원 내) : 2004년 설치
- ⑧ 물놀이장(216㎡ 본관동 앞) : 2005년 설치

관련규정 발췌

□ 「청소년 기본법」

제63조(권한의 위임·위탁)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학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운영의 일부나 전부를 청소년단체 등(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관리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연장할 수 있다.

④ 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학습원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도지사는 학습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운영과 시설개보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

② 도지사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 중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민간 위탁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 한해서는 시행일을 2015년 9월 1일부터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종전의 규정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며, 위탁기간 만료시점에 이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